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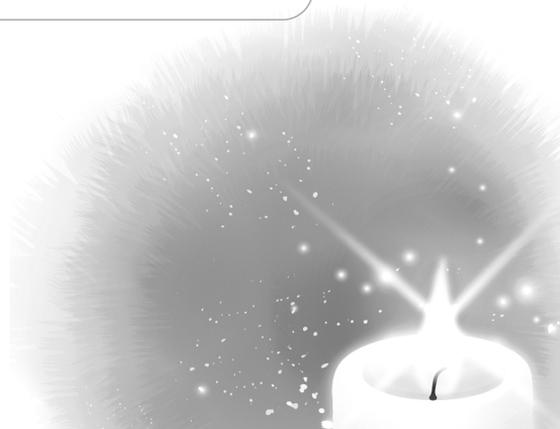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회의 사명
Church's Role to the Mission to the Immigrant
and Social Integration

신 경 규

고신대학교 선교학과 교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157
- II. 한국의 다문화 상황 | 158
- III. 다문화 사회통합의 의의와 정책 유형 | 166
- IV. 이주민들의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 정책 | 172
- V.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 | 184
- VI. 결론 | 202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회의 사명

국제 이주는 세계화 현상의 한 추세로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국 사회에도 이주민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은 이제 다인종국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한국에서 일하거나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로서 건강하게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점검할 때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들로서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결혼이주민자녀, 유학생, 북한이탈자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각각 다른 선교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인들이 꺼리는 힘든 노동(3D)을 하며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보호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결혼이주민의 경우 가정에서

의 불화문제가 심각하며 이혼율이 국내이혼율보다 훨씬 높다. 서로의 문화가 이질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데서 오는 결과이다. 결혼 이주민들의 자녀문제 또한 많은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들 결혼이주민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역교회가 국가별 거점 교회를 세워 집중적으로 보살피는 것은 그들의 인권보호와 선교를 위해 매우 적절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유학생은 초기 중국유학생들의 무분별한 유입이 통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 수가 감소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선교적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교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성경적인 정책의 시행자 및 보조자,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이주민선교를 위한 의식 변화의 계몽자로서 또한 한국인과의 문화적, 인종적 거리를 좁혀주는 매개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조언하고 정책 발안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 평가함으로써 다문화한 한국사회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hurch's Role to the Mission
to the Immigrant and Social
Integration*

주요어

이주민, 이주민선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사회통합, 결혼이주민자녀,
북한이탈자, 국내외국인선교

Abstract

Church's Role to the Mission to the Immigrant and Social Integration

Prof. Dr. Kyung-Kyu Shin

International immigration is common all around the world as a phenomenon of globalization. Korean society enter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increase of the immigrant. In this situation, Korean churches have a good opportunity to preaching the Gospel to them, and also have obligations for them to establish laws and structures for them to settle down in Korean society soundly. It has come to the time to check the role of Korean churches in reaching them.

Korean immigrants are composed of foreign laborers,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foreign students, and escapers from North Korea. Missionary approaches to them are different and have to be different. Among them foreign laborers are in severe difficulties in adjusting Korean society and its culture including language problem. In addition to them, they also confront economic difficulties, excessive labor hours, social involvement, ... etc. Marriage immigrants also have their own difficulties: family trouble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language problems, social adjustments in spite of discriminations, and

their children's adjustments as well. Their divorce rat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Korean couples. Bi-cultural children have difficulties in adjusting their study and life in schools due mostly to the distorted views of Korean parents and their children. Korean churches have to pay attention to their voices, and need to establish pivot churches to solve those problems by cultures and countries, and caring for them as a sound members of Korea including evangelization.

Korean churches need to establish their mission structures as to help and evangelize foreign immigrants. They need to have roles to change Koreans' mentality to have sound aspects to the immigrant as enlightening Koreans to see human beings and foreign immigrants rightly. In addition to that, they also need be catalysts, doers, and helpers to foreign immigrants for sound multi-cultural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making and applying rules and laws in government for immigrants' right as human beings.

Keywords | mission to the immigrants, foreign laborers,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I. 들어가는 말

국제 이주는 세계화 현상의 한 추세로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국 사회에도 이주민¹⁾ 숫자가 140만 명(2011.12. 현재)에 이르게 되면서 한국은 어느새 다인종국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한국에서 일하거나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다. 국제이주를 통해 그 동안 ‘가는 선교’에서 ‘오는 선교’로 선교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로서 건강하게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점검할 때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타당하고도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는 이들 정책을 발안하고 성경적인 시행자, 보조자, 촉매자, 매개자 등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조언하고 정책 발안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 평가함으로써 다문화한 한국사회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포함한 이민자 선교와 이민자들과 원주민 한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이주민이라 함은 노동을 하는 법적 ‘근로자’로서만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시민적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주민의 개념에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도 포함된다. 박천웅.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선교와 신학』 29집 (2012 봄), 19.

II. 한국의 다문화 상황

1. 국내 이주민 현황

2012년 5월 기준 국내 총 이주민은 1,440,278명이다([표1] 참조).

[표 1] 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체류 자격별	계	방문취업 (H-2)	비전문취업 (E-9)	거 주 (F-2)	재외동포 (F-4)	결혼이민 (F-6)*	영 주 (F-5)	기타
인 원	1,440,278	294,964	243,746	102,423	159,212	44,385	73,597	449,276
비 율	100.0%	21.7%	16.8%	9.9%	9.8%	4.9%	4.7%	32.2%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2. 5. 31 현재)

* 2012년도에 신설된 제도

이는 그 이듬 해 6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현황』에서 집계한 1,392,167명
에 비해 48,111명이 증가한 숫자이다 ([표2] 참조).

[표 2] 국내 이주민 통계

총 외국인 1,392,167										
외국인력 716,000										
전문 인력 (E-1~E-7)	비전문인력 491,800		불법 체류자	단기취업 등 16,407				유학생 (D-2)	결혼 이민자	기타
	E-9	H-2		단기 취업 (C-4)	산업 연수 (D-3)	기업투 자연수 (D-8)	선원 취업 (E-10)			
42,275	196,660	295,140	166,518	789	1,974	6,798	5,873	65,874	144,058	466,236
	234,295	303,368						68,039		

출처: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2011. 6월 현재).

* 아래 숫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월호)』(2011. 12. 31 현재)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표2]에서 국내 총 이주민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 정도(716,000명)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E-9)는 23만 여명이고, 외국국적 동포(H-2)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16만 여명에 이른다.²⁾ 전체 이주노동자가 약 72만 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의 경우도 근로는 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 비공식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적으로 8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 된다. 따라서 사실상 국내 모든 이주민 중에 근로하는 이주노동자는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다.

2. 국내 이주노동자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국내 총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의 수는 716,000명이다 (2011. 6월 현재).³⁾ 국내 이주노동자의 꾸준한 증가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이 저임금 시장을 통하여 생산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측면과 부족한 인력의 채우려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 1990년대 초기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주로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소위 3D 업종⁴⁾에 지원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절대수의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라는 용어(법무부 사용)를 사용하지 않고 등록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일한다는 의미로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worker)’로 부르기로 하였다. 박천웅. 앞의 글. 19.

3)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2011. 6월 현재).

4) 3D란 dirty, dangerous, difficult 를 말하며 업종으로서 기계, 염색, 도금, 선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2-1] 국내 이주노동자 현황

외국인력 716,000명							
전문인력 (E-1~E-7)	비전문인력 491,800		불법 체류자	단기취업 등 16,407			
	E-9	H-2		단기취업 (C-4)	산업연수 (D-3)	기업투자연수 (D-8)	선원취업 (E-10)
42,275	196,660 234,295	295,140 303,368	166,518	789	1,974	6,798	5,873

출처: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2011. 6월 현재)

* 아래 숫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월호)』(2011. 12. 31 현재)

현재 국내에서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1인당 연간 GDP 가치는 260만원이다.⁵⁾ 이는 자신들이 수령하는 금액에 비해 훨씬 높은 액수이다. 그만큼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이주민의 영역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상황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국제통합과 난민협회는 2005년 현재 국제이민이 전세계인구의 2%인 1.75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⁶⁾ 이는 30년 전인 1975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국제이주의 증가는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고임금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주 수용국 입장에서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국가 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이주노동의 현상이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3. 유학생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 숫자는 한국어 연수생을 포함하여 88,468명이고,

5)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노동시장 및 중장기관리체계 개선방안연구』(서울: 노동연구원, 2007). 9.

6) The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The Refugee Association

7) 박천웅. (2012), 21.

그 중 유학생 숫자는 68,039명이다.(2011. 12. 31 현재)

[표 3]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38,649	56,006	71,531	80,985	87,480	88,468	86,619
유학(D-2)	30,101	41,780	52,631	62,451	69,600	68,039	67,516
한국어 연수(D-4.1)	8,548	14,226	18,900	18,534	17,880	20,429	19,103
전년대비 증감율	55.9%	44.9%	27.7%	13.2%	8.0%	1.1%	-2.0%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1. 12월호). (2011. 12. 31 현재)

특이한 점은 유학생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해마다 만 여 명씩 증가하던 유학생(D-2) 숫자가 2010년 들어 만 명 이하로 증가 하다가 2010년도와 2011년도 사이에는 1,600명 정도 감소하였고 2012년(5월 기준)에는 유학생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도에는 한국어 어학연수 생의 증가로 전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이는 정부가 유학생의 위장 취업문제로 유학생 자격요건 강화하여 유학생의 요건이 까다롭게 된 것이 그 주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4. 결혼 이민자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2011.6)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전체 211,458명이다 (2011. 1월 기준)⁸⁾.

8) 이는 6개월 이후의 통계인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144,058명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표2] 참조). 이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만 그 인원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2011.6월 현재).

[표 3] 결혼 이민자의 지역별 체류현황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광주
숫자(명)	55,182	62,257	13,716	5,279	10,113	6,457	4,656	3,770
비율(%)	24.9	28.0	6.2	2.3	4.6	2.9	2.1	1.7
	전남	전북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제주
숫자(명)	9,240	8,277	11,851	9,103	3,603	10,359	6,011	1,998
비율(%)	4.2	3.7	5.3	4.1	1.6	4.7	2.7	1.0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11.9).

이들 중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62,257명)와 서울(55,182명)이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134,155명)는 전체 결혼이민자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곳은 국내에서 인구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표 4] 결혼 이민자 출신국가별 체류현황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기타	합계
	한국계	중국계						
숫자(명)	72,329	61,587	39,757	11,761	10,285	4,190	21,058	21,963
비율(%)	32.6	27.8	17.9	5.3	4.6	1.9	9.5	100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11.9).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로는 중국이 전체 60.4%(133,916명)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한국계(동포) 중국인이 32.6%(72,329명), 중국계 중국인이 27.8%(61,587명)이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외국계는 베트남이 17.9%(39,757명)로 두 번째이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5.3%), 일본(4.6%)으로 만 명 이상이며 그 뒤를 이어 다섯 번째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가 캄보디아(1.9%)이다.⁹⁾

9) 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집계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추가되어 있고 일본인 숫자가 행정안전부 통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58,169명으로 나타나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작성된 내용이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는 전체 체류자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다문화 가족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숫자는 151,154명으로 나타나 있다.(2011. 1월 현재) 다문화지원정책이 본격화된 2006년 이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 76%가 증가했고 이듬해 2008년도에는 증가율이 감소했으나 1009년도에 들어서면 84.5%가 증가해 그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0년에는 15만 명을 넘었고 당분간 그 증가하는 숫자는 4만~5만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다문화 가족 자녀의 증가추이

년도	'06	'07	'08	'09	'10
숫자(명)	25,000	44,000	58,000	107,000	151,000
증가인원	-	19,000	14,000	49,000	44,000
증가율(%)	-	76%	24.1%	84.5%	41.1%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2011.6).

다문화 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현황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6세 이하의 아동이 6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7~9세로 24.9%를 차지하고 있다. 표에서 9세 이하 아동이 전체의 86.7%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저 자녀출산율에 당면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아동인구 전체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국적별	계	중 국	미 국	베트남	일 본	필리핀	태 국	기 타
인 원	1,395,077	677,954	132,133	116,219	58,169	47,542	45,634	317,426
비 율	100%	48.6%	9.5%	8.3%	4.2%	3.4%	3.3%	22.8%

[표 7] 다문화 자녀 연령별(18세 미만) 현황

구 분	합계	6세 이하	7~12	13~15세	16~18세
자녀수(명)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비율(%)	100	61.9	24.9	8.2	5.1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1.6).

결혼이민자의 국적 현황을 보면 남자가 전체의 12.1%, 여자가 87.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국적 취득자는 69,804명으로 전체의 33%, 국적 미취득자는 전체의 67%이다. 국적취득자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가 전체에서 2.0%(6.2%)인 4,317명, 여자가 31%(93.8%)인 65,487명이다.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남자가 8.8%(13.1%)인 18,561명, 여자가 58.2% (86.9%)인 123,093명이다.¹⁰⁾ 이는 남자의 경우가 국적을 취득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자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취득이 그만큼 더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자녀들의 남녀 간 현황은 남자 자녀의 숫자가 2,800명가량 더 많다. (괄호안의 숫자는 남녀 간 비율)

[표 8]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현황 및 자녀현황

	결혼이민자						자녀현황
	합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남(명,%)	22,878	12.1%	18,561	8.8(13.1)	4,317	2.0(6.2)	76,985
여(명,%)	188,580	87.9%	123,093	58.2(86.9)	65,487	31.0(93.8)	74,169
합계	211,458	100%	141,654	67%	69,804	33%	151,154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1.6). 2011. 1월 기준

* () 안의 숫자는 항목별 남녀 비율

다문화 자녀의 유형을 보면 외국인-한국인 부모를 둔 자녀가 83.5%인 126,317명, 한국인 부모의 자녀수가 10.1%인 15,216명, 외국인 부모(중도입국 자녀)의 자녀가 6.4%인 9,612명으로 나타나 있다.¹¹⁾ 결혼이민을 통하여 한국

10) () 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11) 한국인 부모의 자녀 수와 외국인 부모(중도입국자녀)의 자녀의 수는 각각 그 부모중

에서 새로 태어난 혼혈 아동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다문화 자녀 유형

구분	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외국인 부모 (중도입국자녀)
자녀수(명)	151,154	126,317	15,216	9,612
비율(%)	100	83.5	10.1	6.4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2011.6). 2011. 1월 기준

6. 귀화자

2006년 정부 외국인 다문화 정책 표방 이후 한국 국적 귀화자 숫자의 비율은 결혼이민자 숫자의 비율과 그 궤를 같이 한다. 2011. 11월 현재 한국 귀화자는 중국이 가장 많은 77.3%(64,340명)이며 그 다음이 베트남 13.4%(11,222명), 필리핀 3.5%(2,888명) 등의 순으로 많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귀화자 중 동북아문화권에서 온 자들의 비율이 91.5%를 차지하고 있다.¹²⁾ 이는 한국의 유사 순종주의적 성향의 영향이 큰 이유인 것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10] 2006년 정부 외국인 다문화 정책 표방 이후 한국 국적 귀화자 통계

	총계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기타
2006~2011.11	83,139	64,340	11,222	732	2,888	10,295
	100%	77.3%	13.4%	0.8%	3.5%	5%
2006이후 유교 동북아 문화권		91.5%			기타	8.5%
2010	16,312	11,876	2,997	181	450	808
	100%	72.8%	18.3%	1%	2.7%	5.2
2010 유교, 동북아 문화권		92.1%			기타	7.9%

출처: 법무부 통계, (2011.12)를 재구성; 박천웅. (2012), 42 에서 재인용.

일인 이상이 재혼인 경우를 의미한다.

12) 2009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동북아문화권 출신이 92.1%을 차지하고 있다.

7.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자의 숫자는 1998년까지 전체 947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유입 숫자가 급속히 늘어난다. 북한 내 어려운 경제사정과 인권탄압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유입 숫자의 순 증가는 2001년도에 1,000명을 넘어서고 2001~2009년 사이에 매년 1,000명대를 유지 하다가 2006년도 이후에는 2000명대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2,927명으로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그 이후 2000명 대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1] 북한 이탈자 추이

(2011. 12.31 현재, 단위: 명, %)

구분	~'98	~'01	~'02	~'03	~'04	~'05	소계('01이후)	
남	829	563	506	469	626	423	3,416(2,587)	
여	118	480	632	812	1,268	960	4,270(4,154)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7,688(6,741)	
여성비율	12%	46%	56%	63%	67%	69%	55.5%(61.6%)	

구분	~'06	~'07	~'08	~'09	~'10	~'11	소계(06~11)	합계
남	509	570	612	666	579	819	3,755	7,171
여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11,659	15,929
합계	2,018	2,554	2,809	2,927	2,379	2,737	15,414	23,100
여성비율	75%	78%	78%	77%	76%	70%	75.6%	69%

출처: 통일부.

Ⅲ. 다문화 사회통합의 의의와 정책 유형

다문화(multiculture)란 “단일문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사회 안에

각기 다른 집단들이 형성해 낸 문화가 혼재된 상태”를 의미한다.¹³⁾ 다문화란 세계화의 조류에 따라 국가가 개방되면서 하나의 사회 안에 다른 생활양식이 혼재된 상태이다. 이는 기존 인구집단과는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으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동포 등을 통칭한다.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 가족은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문화적 차이나 가치관이 존재하는 가정을 말한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비통합적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각 개인의 존엄성회복 및 사회공동체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개발전략 중 하나이며,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정의의 구현이다.¹⁴⁾ 이 과정에 있어서 사회는 분산적 상태로부터 보다 결합적 단결적 상태로 전화되어 가는데 사회내 집단이나 개인은 서로 ‘적응’함으로써 보다 결합적, 단결적 상태로 바뀌어 가는데, 분리되거나 다양한 부분들이 결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사회구성원들은 사회통합을 통해 하나의 다양한 전체로 결합되고, 다양한 집단이나 인종집단들은 상호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통합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문화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주자들의 이주사회로의 통합정도, 한 사회 속에서 제도와 조직 내부로의 통합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통합은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적응(accomodation)으로, 이는 이주사회에서 언어와 제도적 규정을

13) 김태원, 김유리. “다문화 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and Miller의 모형틀 중심으로,” 『인문연구』 62호. (2011).

14) 문형표. “사회통합의 의의 및 정책적 과제.” 『동향자료』 (한국사회복지협회, 1994), 59.

15) 김태원. “다문화 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389-423.

이해하는 등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들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문화화(acculturation)는 주류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가치나 규범들, 태도와 사고들이 (부분적으로) 전승되고 내면화 된다. 다음 단계인 동화(assimilation)는 이주자가 자신의 출신사회와 관련된 모든 특성들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와 완전한 동일시를 이루는 것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동일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편입(incorporation)이란 이주자들의 모국문화에 기반한 개별적 제도들이 이주사회 속으로 삽입되어 이주자들의 출신국 문화가 이주사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¹⁶⁾

Castle과 Miller는 이와 같은 통합정책 모델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 즉 배제나 수용이냐에 따라 차별적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동화(assimilation), 그리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분류하고 있다.

1) 차별적 배제정책(policy of differential exclusion)

차별적 배제정책은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를 강조하는데 이는 동화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단일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민족의 강력한 동질성을 전제로 하며,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 자민족주의 등으로 표현된다.¹⁷⁾

따라서 단일문화주의는 우월한 문화집단의 존재와 가치를 종식적으로 인정하며, 이주민의 문화, 소수집단의 가치는 중심문화로 동화하게 하거나

16) Stephan Castle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 (NY: Guilford Press, 2003), 236-238.

17) 한경규. “문화상대주의,” 『신인문』 창간호 (1997, 여름), 90.

배제하여 기존의 단일문화로 통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보여주는 사상이며¹⁸⁾ 차별적 배제정책은 그에 따른 사회통합정책이다.

2) 동화정책(policy of assimilation)

동화주의정책은 차별적 배제의 유형과 함께 단일문화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동화주의정책은 동화대상 집단이나 개인들이 주류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일하게 변해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행하는 흡수통합방식의 정책이다. 이민자들은 동화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가진 특성이나 관습, 종교, 문화 등을 융합, 융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하거나 상실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자연적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일방적 습득과정을 통하여 다수집단 문화의 정체성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된다. 동화주의 정책이 도입 되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동일한 정체성의 유지와 통일에 목적을 둔다.¹⁹⁾

동화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비주류에 대하여 주류문화를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주입하도록 강요하고 강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대 문화에 대해 억압적이고 차별화 하는 정책은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정서적 반감을 사고, 오히려 그들만의 문화정체성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동화되었다는 징후와는 달리 소수집단들의 문화는 주류집단의 배타적, 적대적 성향에 대하여 사적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되면서 고유의 내구성과 정체성을 보전해 갈 수 있다. 그런데 소수집단들의 인구수 증대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이 이루어지면 주류사회

18) 김용신. “다문화사회의 시민형성논리: 문화민주주의의 접근,” 『비교민주주의의 연구』 4-2,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8), 34.

19) 김태원, 김유리. (2011), 331.

에 대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집단적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²⁰⁾

동화를 통한 이민자의 통합정책은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최상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이민자들의 권리가 제정되고 사회적 요구가 국가를 압박하게 되면 이들의 권리요구 수용은 불가피하다. 소수자 집단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지속되는 갈등에 사회는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문화주의의 정책(Policy of multiculturalism)

넓은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는 방식 및 전망이다. 또한 좁은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특정 사회의 지배적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다.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배양하는 것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와 전략을 다문화주의라 정의하기도 한다.²¹⁾

다문화주의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키네 마사미는 자유주의적, 조합적, 급진적 다문화주의로 분류한다.²²⁾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여 종족집단(ethnic group)의 존재를 허용한다. 이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동화주의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그러나 시민생활과 공적생활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은 허용하되 국가의 가치나 정체성에 반대하는 이질적 문화나 관습을 드러내는 것은

20) Ibid., 331-332

21)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6), 8.

22) 이하의 내용은 이정욱. “프랑스 사회 갈등과 통합: 무슬림 이민자의 차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 2010), 43-44에서 재인용.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의 구분이 명료한 제한적 다문화주의 특성을 보여준다. 제한적 다문화 인식과 정책의 한계로서 차별과 배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회구조가 유지될 소지가 많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형의 다문화주의로는 다양한 문화,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신뢰를 통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이룰 수는 없다. 지젝(S. Zizek)은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의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한 공간 속에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겠다는 관점인데 이는 일종의 인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²³⁾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 기회의 평등을 부여한다면 이민자와 주류민족 간의 불평등한 구조가 소멸될 것이라는 가정은 동화주의 정책과 유사하다.

조합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보다는 다양성을 조금 더 보장한다. 이는 기회의 평등보다는 사회적 소수자의 경쟁상 불이익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불합리한 조건에 있는 소수집단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가능한 적극적인 재정적, 법적 지원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의도한다는 점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의 가장 큰 차이이다. 따라서 조합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문화가 처할 수 있는 구조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이 자격의 원칙(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 소수민족 집단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경우에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으로서 소수집단의 수용과 허용에 대한 급진적이고도 혁신적인 다문화정책적 접근법이다. 소수 공동체의 수준이 분리 독립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그 층위는 다양하다. 이러한 경향이 주요한 사회적 의제(agenda)로

23) Zizek. “Multiculturalism or the logic of multicultural Capital,” *New Left Review* 225, (1997), 29-51.

상정되는 사회에서는 분쟁의 불씨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상의 사회통합관련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해 보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표 12] 사회통합관련정책의 이론적 논의

구분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주의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정향성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 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함.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함.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함
정책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의 주류사회에의 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점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상호존중과 관용
평등개념	차별의 정당성 강조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	적극적 조치
법적 수단	단속 및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반권리의 허용
정주화	불가능	비교적 가능	가능
국적부여 원칙	속주주의, 엄격한 조건	속주주의, 용이한 조건	속주주의, 이중국적 허용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이질화
사례국가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출처: Kymlich(1995); Castle & Miller(2003); 박진경. “한국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0), 45.

IV. 이주민들의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 정책

1. 이주자별 문제점

이주민들의 문제는 이주민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한국의

사회통합 문제도 이주민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이주노동자, 해외동포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크게 전문인력 이주노동자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다. 이 둘 중 특히 문제가 되는 유형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²⁴⁾ 전체 이주노동자(716,000명) 중에서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69.7%(491,800명)이며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23.26%(166,528명)으로 이 둘을 합하면 전체 90%에 달한다.

[표 12-1] 이주노동자 현황

외국인력 716,000명							
전문인력 (E-1~E-7)	비전문인력 491,800		불법 체류자	단기취업 등 16,407			
	E-9	H-2		단기취업 (C-4)	산업연수 (D-3)	기업투자연수 (D-8)	선원취업 (E-10)
42,275	196,660 234,295	295,140 303,368	166,518	789	1,974	6,798	5,873

출처: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2011. 6월 현재)

* 아래 숫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월호)』(2011. 12. 31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으로 인건비가 1987년 후반부터 급상승하게 되자 한국의 산업자본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일부 이전 가능한 산업은 외국으로 옮겼고 이전 불가능한 산업은 소위 3D업종으로 한국 근로자들이 기피했으

24) 여기서 불법체류자는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단기취업 등 모든 이주노동자 중에서 불법체류자를 의미한다.

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우리산업에 도입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초기에 시행된 산업연수원생 제도(1993,11.)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학생이므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법 비적용, 4대보험 가입 불가능 등의 문제와 인권침해, 체불임금 등 사회문제를 유발시켰고 그러한 관행은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껏 계속되는 현상이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도모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국인 근로자의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기업의 수요와 외국인고용허가신청을 근거로 공급 국가별 배정에 의해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2년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49,000명, 농축산업 4,500명, 어업 1,750명, 건설업 1,600명, 서비스업 150명이다. 이는 현장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이다.²⁵⁾ 농어촌도 노동 강도는 강하지만 노임이 싸고 일할 의지가 있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한데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일을 못할 상황이다.²⁶⁾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과 산업재해에 노출 되어 있다. 2009년 기준 한국인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24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477시간이 더 길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1일 평균 12시간을 일한다.²⁷⁾ 이주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은 4,380시간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2배를 더 일한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은 결국 산업재해와 건강권 위협에 노출될 위험도

25) 이성미, 『다문화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2), 126-127.

26) Ibid., 129-130.

27)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7년 이주노동자실태조사』(서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1), 51.

높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의 부재는 57.5%이며 산업재해를 당해도 법적인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주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는 본인 부담도 47.5%나 된다. 이는 법으로 정한 이주노동자 권리 박탈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²⁸⁾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값싼 인력으로 취급된다. 2007년 현재 기본급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액은 70~80만이 92,491명(37.87%), 80~90만원이 80,154명(32.8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⁹⁾ 이 기본급에서 월정 급여액, 초과근무수당, 특별상여금을 더한 전체 합계액은 약 1,465,000원으로 추정된다.³⁰⁾ 장시간 노동에 비하여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전과 입국 후의 근로계약 위반 사례도 58.3%에 이른다. 근로 계약이 위반 되어도 언어 등의 문제로 제때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³¹⁾ 그러나 초기 상황과는 달리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걱정 없애 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표 13] 비전문외국인력(E-9) 임금별 현황(2010. 5월말 현재)

(단위: 명, %, 원)

구분	계	70만 미만	70~80만	80~90만	90~100만	100~120	120만 이상
계(명)	244,214	18,389	92,491	80,154	46,486	4,841	1,853
비율(%)	100	7.54	37.87	32.82	19.03	1.98	0.76

* 출처: 고용노동부

28) Ibid., 16.

29) 통상임금기준임: 기본급+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표준근로계약서 기준), 즉, 외국인력이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으로서 초과근무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30) 한국교육기술대학교, 『외국인고용허가제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한국교육기술대학교, 2007).

31) 박천웅. (2012), 22-23.

임금 외 이주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보면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에서는 언어적 차별(78.2%)이 가장 높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도 43.9%에 이른다. 더 나아가 미디어에 의하여 이주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부정적 이미지의 각인시키는 현상도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³²⁾

[표 14] 직장 내 차별(다중응답)

차별내용	빈도	응답 비율	사례비율
욕설	347	42.5	78.2
문화(식사, 예절 등)	195	23.9	43.9
폭행	119	14.6	26.8
종교	96	11.8	21.6
성희롱	60	7.3	13.5
합계	817	100	184.0

출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7년 이주노동자실태조사』 (서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1), 48; 박천웅. (2012), 47 에서 재인용.

이들 이주노동자들 중 특히 불법체류자가 받는 고통은 극심하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도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일을 나갈 때에는 아이를 두고 방문을 잠그고 나간다. 학교도 갈 수가 없다. 이들은 그야말로 인권·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상태이다.³³⁾

2) 결혼 이민자

국내 외국인 1명 이상이 포함 된 다문화 가족은 총 38만7천 가구로서

32) Ibid., 23.

33) 이성미. (2012), 142-143.

전체 1,757만4천 가구의 2.2%를 차지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는 설문에 2007년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률이 높아졌다. 2010년 조사에서는 조선족이 일본인보다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동남아인의 선호도 높아졌다.³⁴⁾ 특히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은 이들을 한국인으로 느끼는 정도가 약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1) 결혼 이주민의 증가와 그들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와 정부의 국제결혼 초점은 저 출산의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의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지원정책도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 가정 보다는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성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국제결혼 이주 남성에는 관심이 적고, 한국인 남성의 혈통을 이어갈 국제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저 출산 고령화에 중심이 있다 보니 시부모를 부양하는가?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 자료로서 통계들은 이주여성을 국가별 선호도와 선입견을 만들어 내고 결혼 이주민에게는 차별의 자료로 제공되게 한다.³⁵⁾

(2) 저 소득 가정의 가정 안정의 도구로서 국제결혼

국제결혼 가정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주거 환경도 취약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 미만인 38.4%, 저 소득 층인 100만원 미만인 21.3%로 전체 200만 원 이하 소득은 59.7%에 이른다. 농촌

34)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동아시아 다문화사회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국제이주기구(IOM)·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35) 박천웅. (2012), 25-26.

총각 결혼의 40% 가량이 국제결혼을 하며, 결혼 이민자의 82%가 집안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의 70%는 수도권 거주자로서 점차 국제결혼 가정이 도시 빈민층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현상으로 분석된다.³⁶⁾

(3) 국제결혼 이혼 증가와 ‘신 빈곤층’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이혼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전제 한국인의 이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3%(1,694건)에 불과 하던 것이 2010년에는 9.6%(11,245건)으로 거의 10배나 이혼이 증가 하였다.³⁷⁾ 국제결혼 가정에서 이혼한 결혼 이민자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다. 이혼한 결혼 이민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가 53.4%로서 경제적 ‘신 빈곤층’을 양산해 내는 형국이다. 실제로 무배우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6.4%), 외로움(16.6%), 자녀양육/교육(10.5%)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³⁸⁾

이들 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에게도 한국인과 동일한 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외국인 특례조항에 의하여 건강보험대상자로 지정한 데 이어, 2011년에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³⁹⁾

36) Ibid., 27.

37) 통계청, 『2010년 혼인 이혼 통계』(서울: 통계청, 2010).

38) 김이선 외.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 과제』(서울: 여성가족부, 2010).

39) 이성미. (2012), 232-233.

3) 다문화 가족 자녀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기회 개방 및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역사, 관습을 익히는 문화적 권리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 아닌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국적 부여가 속인주의 정책으로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⁴⁰⁾ 더구나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주 아동을 아동의 권리로부터 배제시키는 정책이다.

(1) 국제결혼 가정 자녀

통계청이 발표한 ‘2011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는 '09년 대비 21.4% 증가한 34,338명이며 학교 급별 비율은 초78.6%, 중16.0%, 고5.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현저히 높다.⁴¹⁾ 그러나 이들 자녀가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학교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80%의 재학 율을 유지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재학 율이 60.9%로 뚝 떨어진다. 이는 일반 한국 고등학생의 재학 율 92.4%과⁴²⁾ 비교하면 30%이상 차이나는 수치이다.⁴³⁾

40) 박천웅. (2012), 29.

41) 부모 국적별 비율로 보면 일본36.4%, 중국17.3%, 필리핀17.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42)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2010.

43) 박천웅. (2012), 29-30.

(2) 중도입국자녀

2011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귀화 신청을 한 중도 입국 자녀가 작년 현재 5,726명이며, 귀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중도 입국 자녀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이다.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도입국자녀는 사회문화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자로 방치되고 있다.

[표 15] 다문화 가정 재학율

구분	국내출생+중도입국	국내출생	중도입국
초등학교	85.0%	85.4%	60.3%
중학교	82.2%	83.9%	55.7%
고등학교	60.9%	70.9%	30.6%
총	83.3%	84.6%	47.3%

출처: 조선일보사, 『주간조선2151호』 (서울: 조선일보사, 2011).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의⁴⁴⁾ 경우 초등학교 60.3%, 중학교 55.7%, 고등학교 30.6% 등 학년 층 재학율이 형편없다. 중도입국 자녀들의 전체 재학율은 47.3%로 절반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⁴⁵⁾

(3)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은 국내 정착 과정 중 입국초기와 정착기, 한국어 학습기와 문화적 적응기, 상대적 빈곤감 시기, 한국정착 혹은 본국 송환의 시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한국정착 과정에서 이주가정 아동은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자신이 이룸이

44) 중도입국자녀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자의 자녀가 외국태생으로서 국내 입국 한 경우를 보통 의미한다.

45) 박천웅. (2012), 30.

아닌 한국인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68.8%, 한국어 문제로 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61.4%, 학교에서의 발음놀림 41.9%, 무시 36.6%, 피부색 25.3%,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차별하는 경우도 21%나 되었다.⁴⁶⁾

국제결혼 재혼 가정의 자녀만 아니라 재혼 가정 자녀들에게는 정체성 문제가 따라 다닌다. 부모가 국제결혼이 재혼인 경우 다 자란 청소년의 아동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학교에 갈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주 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을 보면, 중도 탈락한 아동의 숫자는 약 17,000명 정도로 이주아동의 학교 이탈율은 40.4% 이상이다. 이주아동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산업현장의 노동인력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되는 ‘신 빈곤층 2세’의 그룹으로 형성되고 있다. 2005년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받아들여 모든 국내 체류 아동들에게 중학교까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문화적 권리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 사실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이주 아동들은 아동 노동자가 되고 만다.⁴⁷⁾

2.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에서 국가 정책으로서 ‘다문화’ 용어가 공식화 되어 다문화 정책으로 연구가 시작 된 것은 2006년이다.⁴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그 이후 본격적으로

46)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의 교육권실태조사』(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문화 가정 자녀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 Ibid., 31-32에서 재인용.

47) 박천웅. (2012), 31-32.

48) 홍기원 외,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

시행되어 그 이후 꾸준히 제도가 만들어지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⁴⁹⁾

[표 17] 한국의 다문화 정책

이주민유형	정책지원 내용	비고사항
이주민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정책으로 더불어 살기 · 외국인에게도 복지급여 · 한국 입국 전에 한국문화 이해교육 ·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 10개 언어로 상담
이주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료지원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 제공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별 지원 ·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 한국어 교재 개발과 문화 지원 ·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교육 실시 ·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활 편의 제공 ·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경제적 활동지원 · '외국인 주민지원 표준조례' 제정(지자체) ·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생활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자녀의 언어교육 지원 · 학교를 통한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중도입국 자녀교육 지원 확대 · 기술 및 대안학교 개교 ·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북한이탈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사회적응교육 · 유아와 청소년의 초기적응과 지원 · 정착금과 각종 장려금 지원 · 훈련수당 및 고용장려금으로 취업지원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사회적 기업 장려 · 가족관계등록부, 질환치료 등 생활지원 	
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제' 실시 	

출처: 이성미. 『다문화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2), 221-246.

구원, 2006), iii-iv.

49) 이성미. (2012), 221-246. 참조.

한국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문화사회의 변동 지표로 제시한 것은 저 출산 고령화문제, 국제결혼의 증가,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방출, 교육목적의 유입과 방출, 해외동포, 다국적 기업의 진입과 한국 기업의 현지화, 문화적 교류의 증대(관광과 한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었다. 다문화정책의 사실상의 중심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이었다. 홍기원(2006)은 한국사회가 다문화 관점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에 ‘다문화’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국 사회가 다음 단계로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문화개신이 필수적이고, 문화개신의 중심 단어로서 ‘다문화’가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다문화주의는 시민권 개념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시민권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시민권으로 시민권 개념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민족국가의 개념에 한정 되어 있던 시민권의 개념을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 시민권으로 확장 시키는 적극적인 인권 신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⁵⁰⁾

박천웅(2012)은 한국 내 다문화 관련 정책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⁵¹⁾

[표 18] 국내 다문화 관련 정책의 흐름

연도	연도 별 다문화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사례
1988년	88서울 올림픽, 사회주의권 참가자 국내 입국 허용 등
1991년	현지법인연수제도 도입 등
1992년	유엔가입, 한중수교,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등
1994년	산업기술연수제도 도입 등
1995년	문민정부 세계화 선언 등
1996년	OECD가입
1997년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양계혈통주의 채택 등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등

50) 홍기원 외, (2006), iii-iv.

51) 박천웅. (2012), 38.

연도	연도 별 다문화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사례
2001년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지침’(초등학교)
2003년	한중양해 각서를 통한 한·중 양해각서 폐기로 국제결혼의 간소화 등
2004년	문화관광부 『창의 한국』에서 국가 문화 비전제시, 산업연수제폐지, 고용허가제의 실시, 한·칠레 FTA 발효 등
2005년	반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양국화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 제시,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UN 아동권리협약 권고에 따른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중학교) 등
2006년	외국인정책회의, 사회통합지원정책 및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을 수립, 서울대학교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설치,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등
2007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등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경쟁력 위원회의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 발표,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 발표, 호주제 폐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2009년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다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다문화포럼’조직, 사회통합위원회 발족, 사회통합이수제 실시 등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
2011년	위장결혼에 의한 무국적자 인권 증진 방안 권고, 한-미FTA 국회통과 등

출처: 박천웅. (2012), 38.

V.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

1. 다문화 정책을 위한 선교 신학적 전제

기독교선교의 입장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기독교선교가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어떻게 규정하고 선교에 있어서 사회참여의 위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진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기를 지나면서 기독교 교회공동체 안에는 선교 개념을 다름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왔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선교에 대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선교의 양극화의 현상을 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며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 없는 선교를 말하거나 복음주의적 교회에서는 사회적 책임 없는 선교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선교 개념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침소봉대의 경향을 보이는 이 같은 양극화의 현상은 선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균형 잡힌 이해로 나가는 길을 차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복음주의 교회는 진보적인 교회와 선교 개념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충돌을 경험해왔다. 그 이유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선교 개념에 있어 복음 전도를 통한 개종이라는 전통적 선교 개념을 부정하고 자유주의적 ‘신선교’를 주장하면서 인간화, 세속화, 다른 종교와의 대화의 시도를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복음주의 교회는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반박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이 악한자의 손안에 유린당하는 것을 방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복음주의 교회는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 교회는 선교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메시지만을 선포하는 전도가 선교의 전부가 아닌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74년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 개최하였던 로잔 선교 대회(Lausanne Congress)는 이 같은 입장을 깊이 인식하였고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행동은 양자가 모두 기독교인의 책무”라고 주장하였다.⁵²⁾

로잔 대회를 주관한 존 스토틀(John Stott)는 “진정한 선교는 전도와 사회적

52) *The Lausanne Covenant*, paras, 4 and 5.

책임 양면을 포함하는 포괄적 행동이며 결코 양자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⁵³⁾고 하였다. 그가 이해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모델에 따른 교회의 참여에 있다. 이것은 에큐메니칼 선교에서 발전된 사상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는데, 스토트의 이러한 신학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파송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⁵⁴⁾

우선, 로잔대회에서 복음전도를 사회참여와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대립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 선교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보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자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즉, 진보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이에 반발하여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신학진영에서는 복음전도를 강조했다.

복음전도 ←————→ 사회참여

[그림 1] 전통적 관점에서 본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한편, 로잔대회에서 보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는 이 두 요소가 모두 기독교 선교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선교는 문화명령(창 1:27)과 지상명령(마 28:18-20)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문화명령은 기독교 선교의 사회참여를 포함하는 것이고, 지상명령은 복음전도를 말하

53) Joh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VP), 1992, 337.

54) 신경규. “통전적 관점에서 본 두 선교신학의 합치성 모색,” 『선교와 신학』 29집 (2012 봄), 207-210. 참조.

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양자가 상호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적’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복음전도의 반대 술어는 사회참여가 아니라 복음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사회참여의 반대는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된다. 물론 그는 복음전도의 우선성(the primacy of evangelism)을 말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음전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림 2] 로잔대회에서 보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

복음주의 로잔대회(LCWE, 1974)에서 정립된 양자의 관계는 이후 에큐메니칼 진영의 신학적 입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전에 에큐메니칼의 사회참여 신학이 복음주의의 의식을 깨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복음주의에서 정립한 양자의 관계를 에큐메니칼 신학진영에서 수용하게 되는 상호교호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선교는 교회가 사회에 침투해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어두운 사회를 변혁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교회의 선교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선교의 사역가운데 하나를 만족시킨 것뿐이다.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 교회 개척과 기독교 교육, 공헌과 정의의 사역 이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선교의 관심사는 개인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 이르게 된다. 말씀 없이 증거의 사역은 모호하지만 그 반면에 행함 없이 증거는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⁵⁵⁾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외의 이방 세계를 향하여 힘 있게 나가서 복음 전도와 사회 변혁을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사회 구석구석에 세워가는 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심스러운 자세로 선교에 있어 양극단을 버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행위와 사회의 그늘과 어두움을 밝히는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the comprehensive approach)으로 선교의 움직임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생애 기간 동안 선교사의 온전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실천으로 옮기신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라고 할 수 있다.⁵⁶⁾

따라서 통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교회의 성향이 복음주의 적이건 교회협의회 경향이건 사회적 참여를 선교적 실천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고 다문화 사역은 선교 실천의 영역에서 필히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등장한다.

2.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

1) 계몽자로서의 역할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구성원들에게 타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 역시 한국인들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일일 것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나라의 국민, 한 동지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55) G. Thompson Brown, *Presbyterians in World Mission*, (Decatur: CTS Press), 1988, 6.

56) 방동섭, 『선교없이 교회없습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122-123. 참조.

사시(斜視)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멸시, 천대, 무관심,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본국의 주도주민으로 존재하는 한국원주민이 타국에서 이주해온 인들을 자신과 같은 부류로, 동일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다음 몇 가지 안목과 관점의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이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주민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주민은 한국사회의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교회는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이다. 이주민들은 주로 3D업종을 회피하려는 내국인의 경향에 따라 한국기업과 농어촌의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것은 일반윤리의 관점에서도 옳지 못한 일일진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일 자체가 곧 소명이고, 그를 통해 선교하는 것이다.

셋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저소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동일하게 인간이며,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 이웃이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아픔 속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종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다. 한국인들은 이전부터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이 주류였으나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논의 되고 있다. 한국

역시 주변의 몽골, 중국, 일본 등 국가 민족들과 혼혈인이라는 사실을 지각해야 한다. 미디어에 의해 왜곡보도 되는 바, 이주민들을 이민족이고 낮은 소득국가에서 이주해 왔으므로 그들이 이류인생인 듯이 폄하하는 것으로 몰아가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시선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종교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타종교에 대해 배타주의(exclusivism)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니(요14:6)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한국 국민 전체가 아닌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타종교에 대한 관점이다. 따라서 이는 교회에서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타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타종교에는 전혀 진리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타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 즉 ‘특별은총론적 진리’는 없을 지라도 ‘일반적 진리,’ 다른 말로는 ‘일반은총론적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다.⁵⁷⁾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는 이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종교인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인류사회의 미래를 위해 타종교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여섯째, 국제결혼에 관한 관점의 변화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는 설문에 2007년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률이 높아졌다. 2010년 조사에서는 조선족이 일본인보다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동남아인의 선호도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93.9%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국적을 갖는 것’(89.1%), ‘한국의 정치체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86.1%),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81.4%),

57) 타종교들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는 등의 ‘일반은총론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없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77.5%), ‘한국인 조상을 갖는 것’(64.6%),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63.6%) 등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⁵⁸⁾ 특히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은 이들을 한국인으로 느끼는 경우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들은 저출산·고령화하는 한국사회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자들이다. 일꾼으로서나 열등민이 아닌 동반자로서 나아가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표 19]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미국인	조선족	일본인	중국인(한족)	동남아시아인
2007	34.3%	28.8%	22.2%	25.1%	16.3%	14.6%
2010	36.0%	34.6%	32.2%	31.6%	26.0%	25.5%

출처: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2010년 성균관대 조사 비교.

일곱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제거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입견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편견이다.⁵⁹⁾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 외국인고용 322업체 설문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93.2%가 이주노동자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08년 기준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체의 부족한 인원은 20.6만 명으로서 인력 부족율이 47.8%에 이르렀다. 현재는 단순인력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들의 일손도 모자라는 실정이다. 한국인은 2차 산업인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종 등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93.2%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⁶⁰⁾

58)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국제이주기구(IOM)·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59) 박천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첫째는 ‘이주노동자는 불법 체류자’라는 편견, 둘째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편견이라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으나 전자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박천웅. (2012), 21.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교파를 초월하여 목사님의 의식변화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구성원들에게 이주민을 한 나라의 국민으로, 동일한 인권을 지닌 인간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자들로 인식하도록 교육,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2) 참여자(실행자)로서의 역할

교회가 사회에 비해 보다 선도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선도적으로 이주민 더불어 사는 데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이와 함께 이주민의 현황과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다문화 사회와 정책에 관한 제반 이론을 숙지하여 그들의 아픔 속에 동참하는 일이 시급히 요청된다.

교회와 교회구성원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관점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은 이민자 이웃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관점의 변화가 이민자들을 돕는 실천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실천이 관점의 변화를 가져 올수도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자 내지는 실행자로서 참여할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가정, 이주민자녀들, 유학생들, 귀화자들,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이 외면할 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들 이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가 이들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원거점교회’를 구성하여 지원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60) Ibid., 21-22.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교단별, 교회별 연합과 협력이 요망된다.

둘째,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민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에서는 결혼 이주자들의 국내 정착 애로사항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조하거나 다문화가정에게도 확대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유·무급 인적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셋째, 정부 정책이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회가 대안을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중도입국자녀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인데⁶¹⁾ 이를 위해 교회가 이들을 위한 문화적응, 부진학업에 대한 보충수업, 어학교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등이 해당될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이민자가족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과중한 사교육비를 꼬고 있다.⁶²⁾ 교회가 공부방을 열어 교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이민자 자녀들의 사교육 문제, 학습부진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민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가 ‘가족통합’의 문제이다. 편견,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 문화차이, 저소득, 이민자 자녀들의 문제 등으로 이민자들의 가족을 통합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국제결혼 부부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혼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상담하고 가족 내에 정착하게 하는 과제가 시급한 실정이다.⁶³⁾ 이러한 국제부부는 남녀부부연령차가 여성이 캄보디아인일 경우 18.6세, 베트남일 경우 17.2세 차이가 남으로 가족통합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민자 60%가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⁶⁴⁾ 이들의 소득증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61) 이성미. (2012), 94-95.

62) Ibid., 91.

63) Ibid., 47-48.

64) Ibid., 50-51.

[표 20] 국제결혼 가정의 갈등문제

대표적인 문제	문제 내용
편견과 선입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깊은 차별과 편견 - 돈 벌기 위해 위장 결혼 한 것처럼 오해 - 외국인 신부가 이탈 방지목적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 - 성적 역할의 편견, 성적 서비스, 자녀출산, 집안 살림, 시부모 모시기
언어의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결혼 - 시간이 지나가도 말이 통하지 않아 갈등과 좌절, 분노, 폭력 - 한국인 배우자 역시 외국인 출신 배우자의 언어와 문화 문외한
문화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절과 음식, 관습 문화의 차이, 배우자 상호 문화 이해 부족 -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와 시댁의 문화 -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
술과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 중 30%가 남편의 폭력으로 시달림 - 57%가 폭행, 18%가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 -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 -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빈곤	<p>한국의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20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가구도 15.5% - 20.0% 이상이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 받음. - 이주 여성들 농한기에 인근 공장근로 생활 - 남편들 대부분 건설업과 같은 비정규직, 수입 불규칙 - 재혼 여성 경우 본국에 자녀 양육비 책임으로 경제적 압박
한국생활의 실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낮은 경제력, 농부나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정신장애자, - 농촌의 경우 농사일과 가시 일에 시달림 - 재혼한 경우 아이들 뒤처다꺼리, 시부모 간병 등
낮은 사회적 성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진출, 대부분 노동일 - 국적을 받아도 외국인 취급 - 이주 여성 임신, 출산, 육아, 부양 등 경제적인 자립에 한계.
국제결혼에 대한 낮은 자아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 성격 신체적 장애 등 혼인 시기는 놓쳐버린 내국인 남성 - 중개업소 소개 결혼 비용 대부분 부모나 가족 부담 - 본인 스스로 결혼을 선택 보다는 부모 강요 - 결혼 생활 노력이나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부족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모와 피부색은 놀림의 대상 - 부모의 언어부족으로 학습 지도의 어려움 -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혼란

출처: 박천웅, 『다문화 교육의 탄생』 (안산: 국경없는 마을, 2009), 132.

현재 한국에서는 10명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농림어업자 종사자의 경우 혼인 10명 중 4명이 국제결혼이다. 그리고 한국여성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⁶⁵⁾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가족통합의 실행자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 내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성도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일들이요,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마 5:16) 하나님의 방식이다.

3) 조력자, 매개자로(중재자)서의 역할

이들과 한국인들을 연결해 주고 화해시켜주는 조력자, 매개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매개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첫째, 이주민들의 문화적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민들은 자국과 다른 문화차이로 인하여 다양하고도 혹독한 문화적응의 과정을 거치고 그에 더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가중되므로 여러 가지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쌓이고 그로 인한 과업성취의 부진이나 좌절을 경험하거나 한국 사회내의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⁶⁶⁾ 한국문화에 낯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이들이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내에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하여 지역 내 이주민과 교회구성원들을 연결하여 언어와 문화적응의 멘토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이주민 가정 내 가정폭력이나 부부갈등 등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65) Ibid., 29-34.

66) Ibid., 109-118.

도우미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에서의 여러 이유로 상담해 오는 여성 수는 해가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실적)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건)	382	13,277	19,916	43,454	54,194	68,794

자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⁶⁷⁾ 부부갈등, 가족갈등 등의 이유는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표 22] 2011년도 이유별 상담 건수

순위	상담이유	상담건수
1	부부갈등	9,350
2	이혼법률상담	9,069
3	가정폭력	5,744
4	가족갈등	3,389

자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난 2,000년 전체 한국인의 이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3%(1,694건)에 불과 하던 것이 2010년에는 9.6%(11,245건)으로 거의 10배나 이혼이 증가 하였다.⁶⁸⁾ 만일 교회가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들의 갈등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미시적인 접근을 해 나간다면 가정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67) Ibid., 219.

68) 통계청, 『2010년 혼인 이혼 통계』(서울: 통계청, 2010).

셋째, 교회는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국민 의식 변화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거나 없애고 이주민들 역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중재자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회는 이민자들의 차별을 완화시키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타국인들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원천적인 거부반응을 지니고 있다.⁶⁹⁾ 이는 의식변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교회는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회는 다문화 자녀들이 받는 각종 차별과 편견을 완화 혹은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나아가 가정통합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다문화자녀의 경우, 학교에서 받는 차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그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심각하다. 이는 미래 한국의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차별 실태는 아래와 같다.

[표 23]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차별 실태

차별상황	차별내용
한국 이름 사용 여부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자신이 이름이 있으면서도 한국어 이름 사용하는 경우가 68.8%나 된다. 한국어 이름 사용 이유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42.5%), '한국인이 내 모국어 이름을 이상하게 발음해서'(34.6%), '타인이 권해서'(6.3%),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10.2%) 등으로 답변을 하였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생활과 입학의 어려움	공교육 진입 전에 34.9%가 '혼자 있었다'고 답하였다. 입학의 문제에 대하여는 61.4%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해 입학이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입학절차 이해 어려움' 37.2%, '비자문제' 34.3%, '학교 측의 입학거부'도 15.2%나 있었다고 답하였다.
차별의 경험	학교생활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답한 경우 '발음놀림'(41.9%), '무시'(36.6%), '수군거림'(30.6%), '피부색 놀림'(25.3%), '돌아가라고 협박'(21%), '발로 걷어차임'(15.1%), '소지품 빼앗김'(9.1%)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69)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10); 박천웅. (2012), 25. 참조.

차별상황	차별내용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경험	이주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것'(36.1%),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30.2%), '본국의 학교문화와 한국학교 문화가 다른 것'(28.6%), '나보다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27.8%), '한국학생들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26.7%), '학교수업료 부담'(25.2%), '상급학교 진학이 안 되는 것'(24.0%), '경제적 이유로 취업'(18.0%),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모국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서'(14.7%) 순으로 학교공부와 외국인단속, 학교문화의 차이, 어린학생과의 공부 등의 응답이 높았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의 교육권실태보고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박천웅. (2012), 31-32에서 재인용.

모상현(2009)에 의하면 ‘다문화자녀를 친구로 사귄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내 아동의 1/3가량인 32.3%, 청소년의 34.6%가 친구로 사귀는 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별받는 다문화 자녀의 비율은 읍면지역이 6.7%로 중소도시 3.8%, 대도시 3.9% 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다.⁷⁰⁾ 정부와 학교가 다문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왕따현상은 여전하다. 이는 인종적 차별문제도 있지만 다문화자녀가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 교회는 이들을 감싸 안고 교회 내에서 다문화 자녀와 원주민 학생들의 융화를 이끌어 내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4) 촉진자(촉매자)로서의 역할

다문화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 창의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다문화의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70) 이성미. (2012), 92. 에서 재인용.

감당해야 한다. 이에는 다음의 영역이 포함된다.

첫째, 교회는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 특히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소재 미원초등학교는 2011년 7월 현재 학생 수가 330명이다. 이 중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녀가 151명, 이주근로자의 자녀가 7명으로 총 158명의 48% 정도가 다문화 자녀들이다. 농촌학교가 국제학교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23학년은 일반 아동보다 다문화 자녀가 더 많다. 이 학교의 다문화 수업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각 나라의 위치알기, 각 나라 음식 만들기, 팝송배우기, 외국어학습, 여러 나라 인사법, 여러 나라 전통의상 입어보기, 외국여행경험 말하기 등 그 내용이 일반 한국학교의 교과과정과 완전히 다르다.⁷¹⁾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높이는 등 한국 고유의 교육에서는 배양할 수 없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학교를 운영한다면 인성교육까지 접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다문화 사회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촉진자 내지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사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그 선교적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교회 자체의 성숙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면이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안디옥교회의 다문화적 상황은 타문화에 대한 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선교를 촉진시키고 교회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다문화 사회는 선교지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알고 체험하게 하여 선교사의 문화동화훈련(Cultural Assimilation Training)을 시행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셋째, 다문화 가정에 소속된 각국에서 온 이주민들은 한국과 자신의 나라를 이어주는 외교적 가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부정적인 역할은

71) 이정미. (2012), 104-107.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회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 시켜 다문화 사회의 역량을 극대화 시킨다면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시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촉매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그 창조적 에너지를 극대화 시킬 경우 분명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증거자로서의 역할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사회는 분명 타문화권선교의 좋은 기회이다. 한 가정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성공여부에 관해서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으로는 파송에 따른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하고,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훈련과 생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교지의 문화를 익히고 적응하여 생활하면서 사역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데에는 매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교회가 다문화사회에서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는 아래의 여러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교회는 타종교를 믿거나 불신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얻을 수 있다. 복음을 증거 한다는 것은 선포(proclamation)이나 설득(persuasion) 등 단순히 말로 증거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을 통한 현존(presence)의 증거가 그들에게는 더 효과적이고도 오래 각인 될 수 있다. 물론 봉사는 봉사 그 자체로서 선교이다. 봉사를 선교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로잔대 회로 대변되는 복음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⁷²⁾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는 그 자체로서 기독교적 증거이다.

둘째, 교회는 그들에게 용이하게 증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 가정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한국에 이주해온 이주민의 경우는 그 상황이 다르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한국어를 배운다, 그들 스스로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문화도 익힌다.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이 먼저 한국인에게 다가온다. 접촉이 용이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 유학생, 귀화인 등 이주민들이 한국을 찾은 것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은 복음전도의 기회를 얻은 것이 된다. 물론 교회의 자세는 선교사적 섬김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이주민선교를 통해 교회의 역동성과 복음의 역동성을 배가할 수 있다. 전술한 바, 안디옥 교회에서 보는 마와 같이 교회의 다문화적 여건은 교회를 선교적으로 깨울 수 있다. 조직이 타성에 젖으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한국교회는 조직적 타성과 문화적, 제도적 타성에 젖어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문화권에서 온 이주민 교우들은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교회 내부의 역동성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이주민 교우들의 등장은 한국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인 셈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민사회는 교회의 증거자적 기능을 근대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한국교회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이를 잘 활용하여 증거하며 동시에 교회를 갱신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2) 신경규. (2012), 207-210.

VI. 결론

한국사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인구대비 외국인이 2010년 2.8%에서 2030년 6%, 2050년에는 9.2%로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⁷³⁾ 한국의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그로 인한 급속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명약관화한 미래의 모습이다. 다문화시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⁷⁴⁾ 이에 따라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이러한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교회 또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이민자 현황과 그로 인한 그들과 사회의 문제점, 한국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이주민 정책, 그리고 이주민 선교방안과 그 방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가능한 빠른 시점에 한국 교회가 이민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나아가 그들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본고에서 연구한 바는 미약하고 개관적이지만 제시된 다양한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켜 적용한다면 한국 사회가 살고, 한국교회도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73) 국토연구원. 『그랜드비전 2050』(서울: 국토연구원, 2009); 박천웅. (2012), 18.에서 재 인용.

74) 박천웅. (2012), 18-19.

참고문헌

-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6.
- 김용신. “다문화사회의 시민형성논리: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민주주의의 연구』. 4-2,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8.
- 김이선 외.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 과제』 서울: 여성가족부, 2010.
- 김태원. “다문화 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 김태원, 김유리. “다문화 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Castles and Miller의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62호, 2011.
- 문형표. “사회통합의 의의 및 정책적 과제.” 『동향자료』. 한국사회복지협회, 1994.
- 박진경. “한국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0.
- 박천웅.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선교와 신학』. 29집. 2012 봄.
- 방동섭. 『선교없이 교회없습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국제이주기구(IOM)·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 신경규. “통전적 관점에서 본 두 선교신학의 합치성 모색,” 『선교와 신학』. 29집 2012 봄.
- 이성미. 『다문화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2.
- 이정욱. “프랑스 사회 갈등과 통합: 무슬림 이민자의 차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 2010.

한경규. “문화상대주의,” 『신인문』. 창간호 1997, 여름.

한국교육기술대학교. 『외국인고용허가제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한국교육기술대학교, 2007.

홍기원 외,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Brown, G. Thompson. *Presbyterians in World Mission*, Decatur: CTS Press, 1988.

Castle, Stephan.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 NY: Guilford Press, 2003.

Stott, John,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VP, 1992,

The Lausanne Covenant, paras, 4 and 5.

Zizek. “Multiculturalism or the logic of multicultural Capital,” *New Left Review* 225, 1997.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2011. 6.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1. 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2. 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2011.6.